

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협조

□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실태

○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?

- 의료폐기물을 발생시부터 수집·운반 및 처분시까지 보관하는 용기(골판지류, 합성수지류 용기가 있음)

※ 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)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

○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실태

- 병·의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용기의 상당량이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부적합 전용용기를 사용

※ (폐기물관리법) 검사받은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적정한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(1차 3백만원, 2차 5백만원, 3차 1천만원)

□ 병·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협조사항

○ 검사받은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할 것

- 병·의원 등에서는 검사를 받은 적합한 전용용기인지를 반드시 사전 확인·조사(검증) 후 사용

<문제 사례>

- ☞ 일부 병원을 대상으로 전용용기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('12), 부적합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(약 60%)
- ☞ 일부 사용자는 전용용기 공급 루트 및 검사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·조사(검증) 없이 공급해 주는 불량 제품을 막연히 사용하는 사례 등이 있음